

수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5275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포장자재 및 기타 일반물품의 도소매(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C는 'E'라는 상호로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등 일상용품의 도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0. 2. 8.경 C와 마스크 개당 2,200원씩 총 181,800개를 2020. 2. 16.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C에게 같은 날 1억 2,000만 원, 2020. 2. 10. 2억 8,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약속한 대로 물품공급을 하지 못하자, F은 2020. 4. 14.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1)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2020. 6.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74호 약정금 사건으로 C와 F을 상대로 4억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2020. 7. 27. C와 F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2020. 4. 13.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4. 1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흥시 G 답 2045㎡에 대한 공유자 지분 2045분의 165(거래가액이 48,020,000원으로 기재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204,400,000원) 및 가압류(채권자 주식회사 I, 청구금액 200,000,000원), 원고, 피고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사. 가압류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라 2021.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525,132,262원에 낙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그리고 2022. 12. 22.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345,248,528원을 가압류권자와 피고에게 같은 배당비율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는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208,442,029원은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74호 사건을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카단10834호 채권가압류 사건을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이전에 C의 재산을 조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던 사실과 C의 무자력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2022.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이 사건 설정계약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 성립하는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20. 2. 8.경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C가 약속한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F이 C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은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두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위 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C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설정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C는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20. 4. 8. 피고로부터 받은 4억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K에 계약잔금일부란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여,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남짓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심각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는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선행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에 비추어 피고가 대여해 주었다는 4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준 4억 원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변제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액과 이 사건 설정계약의 시기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상회복방법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기타재료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지2층 150.58㎡

지1층 175.26㎡

1층 145.55㎡

2층 내지 20층 각 480.97㎡

21층 449.98㎡

22층 내지 24층 각 239.59㎡

25층 205.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대 57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P 철근콘크리트조 84.9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7682분의 56,403

끝.

[별지 2] 채권의 표시

1

2

1)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1,000만 원은 C의 요청으로 원고가 보증금으로 대여하여 주었던 것인데 이를 합산한 것이라고 한다.